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0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4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□ 개정사유

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,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능력 향상을 도모하고, 교사들에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수·학습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충청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충북공업고등학교 (청주시 가경동 666번지)에 추가로 설치함 (안 별표).

□ 개정근거

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(지기 12200-887, '94. 11. 3.)

□ 조 례 안 : 덧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- 교육부 교육기관 설치승인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공문서 사본 : 덧붙임
- 충청북도의회 부의안건 공고문 사본 : 덧붙임

○ 예산조치상황

구 분	항 목	금 액	비 고
국 고	기자재구입	734,185,000원	
자체예산	운 영 비	13,830,000원	'95. 예산에 계상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]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충북공업고등학교에 설치된 공동실습소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